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양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3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 김소양, 김소영, 김용석,
김재형, 김진수, 김화숙,
봉양순, 성중기, 여 명,
이석주, 이성배, 임종국,
전병주, 채유미, 최정순,
한기영 의원(16명)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5.)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u>서울특별시</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문서번호	2021020100000026
------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김소양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백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 02. 01.	내용문의 : 02-2180-7954
회신일 : 2021. 02. 02.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시장 등의 책무)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원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